

사설

‘기구축소’에 대한 우려

그동안 한약재 관련정책은 생산과 유통분야가 농림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 관리돼 옴으로써 절름발이 정책의 표본으로 지적돼 오곤 했다. 보건복지부의 한약정책이 한방의 과학화와 세계화를 표방하며 21세기를 열어 나가는 것과는 달리 한의약 발전의 디딤돌이 될 국내 생약농업현실은 10년전과 별반 달라진게 없을 만큼 낙후돼 있기 때문이다. 다른 농작물과 비교해 재배면적이나 농가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모든 정책적 지원면에서도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현실이다.

한약재 관련정책시행에 있어서 농림부와 복지부의 이같은 불균형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도 드러났다. 최근 정부조직 직제개편내용에 따르면 농림부 원예특작국이 폐지되고 기존의 농산정책심의관과 원예특작국을 통합, 농산원예국이 신설됨으로서 생약 관련업무는 농산원예국 산하 체소 특작과에서 담당하게 됐다. 약용작물 분야를 담당했던 특작‘국’ 규모가 ‘과’로 축소 통합된 것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내에 한방정책관실이 신설되고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한방정책관을 그대로 존속시킴은 물론 ‘국으로 승격설까지 대두됐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방침이 아닐 수 없다. 물론 IMF 시대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만든다는 조직개편 원칙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같은 기구축소·통합으로 인해 생약농업육성에 대한 정부 정책의지까지 축소 사멸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근 제약업체에서는 생약재를 이용한 건강음료를 앞다투어 출시하고 있고 생약수요도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다. 또 환율상승으로 국산약재의 수출경쟁력도 높아져 외화획득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연 4천억 규모의 생약산업은 이제 단순한 산술적 개념에서의 재배면적 비중을 떠나서 그 이상의 가치와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만약 국내생약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나면 국내 한약소비량 전량을 수입 약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식량의 무기화’에 버금가는 ‘생약자원의 무기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기구축소’가 생약분야의 ‘정책의지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고로쇠 수액 허가받아야 채취 산림청 지침시달

앞으로 고로쇠나무 수액을 함부로 채취할 수 없게 됐다.

산림청은 본격적인 고로쇠나무 수액 채취기간을 맞아 나무의 생장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과도한 수액채취를 방지하기 위해 수액채취 관리지침을 각 시도 및 지방산림 관리청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수목의 가슴높이 지름 10cm 이

하의 어린나무에서는 수액채취가 금지되며 나무 한그루당 1년에 1회에 한해 채취하고 채취한지 7~10일이 지난후에는 즉시 채취구멍을 코르코 등으로 막아 수목을 보호해야 한다. 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하면 산림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규격화 재검토 ‘촉구’ 7개 관련단체, 유통관행 수용 호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한국생약협회 등 한약관련 7개 단체는 지난 2월 17일 규격화 시행을 전면유보 또는 재검토해줄 것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7개 단체는 탄원서를 통해 “개정안 내용 자체가 한약특성과 유통관행 수용을 호소하는 업체의 공통된 의견이 반영되기보다는 약사법 틀에 억지로 꾸맞춤으로서 현실을 도외시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36종 시범규격화제도의 문제점 및 미비점 조차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제도의 확대시행은 150% 정도의 약재가격 상승을 초래, 소비자 부담은 물론 자칫 한약시장의 붕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 최근엔 단순의약품의 경우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는 등 의약품판매에 관한 법안이나 규정등이 전반적인 완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제조업소를 통해서만 규격품을 제조 유통토록 하는 한약관리규정 개정안은 이같은 시류에도 역행하는 쳐사라고 반박했다.

더구나 IMF 시대상황 속에서 국내 생산기반을 다지고 장려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규격화라는 명목으로 영

세한 한약관련업체와 생약재배 농민들의 판로를 제한해서는 안될 것이며 또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국산생약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려는 전 한약업계의 발목을 잡아매는 것이 되어서도 안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제

녹용 판정기준 크게 강화 회분함량 25% 이하로

정부의 녹용 판정기준이 ‘회분함량 25% 이하의 골질화되지 않은 사슴뿔’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녹용의 판정기준을 종전 회분함량(불에 태워 남은 재의 함량) 35%에서 25% 이하로 재조정하는 내용의 ‘녹용 회분함량 기준’을 개정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슴뿔의 중간부분으로 회분함량이 25%를 넘어 35%까지는 별도 명칭과 규격기준을 만들고 이미 골질화가 진행된 사슴뿔 아랫부분은 현행대로 녹각으로 구분해 유통시키기로 했다.

복지부측은 “회분함량 25~35%인 부위의 사슴뿔을 녹용과 차별화시키는 차원에서 ‘골질녹용’이나 ‘녹용각’으로 명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녹용판정기준은

조업소를 제외한 관련단체들의 이같은 반대움직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반면 한약규격화 제도시행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변함없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제도정착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8월 회분함량 25%에서 35%로 상향 조정한지 6개월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셈이다.

이에 따라 종전의 기준으로 수입된 사슴뿔중 상당수가 녹용판정을 받을 수 없게 돼 한의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순수’ 녹용은 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한편 녹용 유통업계는 판정기준이 회분함량 38% 이하인 일본이나 40% 이하인 중국과 달라 통상마찰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뉴질랜드·중국·캐나다·러시아 등지에서 수입된 녹용은 2천3백만 달러어치, 11만8천8백kg에 국내산 자급률은 27.3%이다.

약용음료·영지버섯등 강원 1지역 1명품 선정

강원도는 올해 1지역 1명품사업 대상으로 태백농협(조합장 박광옥) 약용음료, 삼척시 원덕농협(조합장 김종익) 왕마늘, 횡성군 서원농협(조합장 문갑식) 장류, 원주시 단강영지작목반의 영지버섯 등 모두 4개 사업을 선정하고 4억9천5백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 96년부터 1지역 1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는 이에 따라 각 시군별 17개 지정품목 가운데 올해 까지 모두 13개 생산자단체 및 작목반에 1억여원 정도를 각각 지원했다.

한편 도가 지역고유의 농특산품 육성을 위해 지난 96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4억원씩의 자체기금을 확보해 추진중인 1지역 1명품 지원 기준은 연리 2%다.

제천에 ‘약초향나는 거리’ 조성한다 작약 산수유 심어 ‘약초의 고장’ 홍보

충북 제천시에 향초향이 나는 거리가 조성된다. 제천시는 지역특산 품으로 지정한 제천약초의 성가를 높이기 위해 모란·작약·도라지·산수유 등 꽃이 피는 약초로 꽃길, 소공원과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제천이 약초의 고장임을 알리고 약초재배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여주기 위해 우선 용두동 신당로 주변 9백90m에 모란·작약·

도라지를 중심으로 약초로원과 약초꽃길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청사 진입로 등 주변도로 1백m에 산수유나무 50그루를 심어 꽃과 열매가 조화를 이루는 거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제천지역의 문수산·월악산·박달재·송학생약·제천약초 영농조합법인 등 5개 약초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약초로원과 꽃길 조성사업은 오는 3월에 파종, 11월 까지 계속된다.